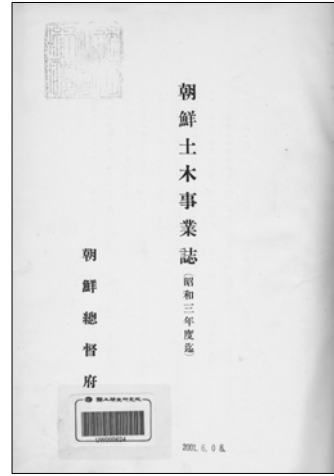


① 朝鮮土木事業誌 조선토목사업지

1937년 / 조선총독부 / 1530면 / 06.40-06 조53조 1928

조 선총독부(朝鮮總督府)에서 1937년에 발행, 한 일합병에서 1929년 말까지(1910~1929)의 토목사업을 총괄한 1,500여 면의 방대한 기록이다. 주요 내용은 ① 조선 토목제도의 연혁을 비롯하여 ② 도로, ③ 하천, ④ 항만, ⑤ 시가지 정리, ⑥ 상수도, ⑦ 하수도, ⑧ 재해복구, ⑨ 부록으로 토목사업 관계 직원의 명단과 ⑩ 관계법규를 수록하고 있다.



법규는 ① 조선토지수용령(令)을 비롯하여 ② 조선하천령, ③ 조선공유수면매립령과 도로규칙과 시가지 건축취제 규칙 등이 수록되어 있다. 시가지 건축취제 규칙은 조선시가지계획령(지금의 도시계획법)이 제정되기 이전의 잠정적인 도시계획법이라고 볼 수 있다.

일제가 1910년에 우리나라를 강점하자 토목(건설) 분야에서 가장 먼저 제정한 것이 1911년의 '조선토지수용령(朝鮮土地收用令)'이었다. 조선총독부가 토지수용령이 다급하게 된 이유는 첫째, 군(軍)의 주둔에 필요한 군용지와 토목사업 예정지의 강제 매수가 시급했기 때문이다.

당시의 토지수용령(令)은 지금의 법(法)이다. 당시 일제는 조선총독에게는 제령권(制令權)과 예산편성권을 부여했다. 제령권이란 일본의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조선총독이 스스로 법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따라서 당시의 '조선토지수용령'이나 '조

선도로령’, ‘조선하천령’, 또는 ‘조선시가지계획령’ 등은 지금의 법(法)으로 보아야 한다. 당시의 토지수용령은 지금의 토지수용법보다 훨씬 강압적인 법이었다. 36년 간의 피통치 기간 중 우리 민족은 이 법의 발동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토지를 빼앗기다시피 했다. 그 악명이 얼마나 높았던지 해방된 지 5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나라 신문들은 “○○지역에 토지수용령 발동”이란 말을 쓰고 있다. 또한 이 책은 1910년에서 1928년까지 서울의 물가와 노임지수(勞賃指數)를 월별로 기록하고 있다.

한편 이 책에는 1912년에서 1928년까지의 전국 10대 도시, 즉 서울, 인천, 평양, 원산, 대구, 진남포, 목포, 군산, 부산 및 청진에 대한 노임통계가 실려 있다. 이를테면 1912년 서울에서 목수의 경우 일본인은 1엔(円) 50전(錢)인 데 반하여 조선인은 1엔이었고 일반 인부는 일본인 78전인 데 비하여 조선인은 42전이었던 것이다.

이밖에도 이 책에는 1910년부터 1929년까지의 연도별 토목사업비 지출내역이 기록되어 있다.